

集團行動

—木洞事件을 中心으로—

元 売 朝*

I. 葛藤과 福祉

Gough는 신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북지국가의 성장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힘과 형태, 즉 계급갈등의 정도와 둘째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장기간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능력, 즉 중앙집권화된 자본주의 국가구조가 그것이다. 이 두 득립변수는 일종의 선형변수인 특정한 기간 및 국가환경 하에서의 자본축적과 이전의 국가구조 및 자본주의 발전의 근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¹⁾

계급갈등의 정도와 자본주의 국가의 관리능력에 의해 사회정책이 도입될 때 초기에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은 모두 이를 환영하였다. 노동자계급은 생활의 쾌락과 불완전한 시장세력을 수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환영하였고,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경제적·이데올로기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의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양쪽의 요구와 이익의 상충으로 인하여 이익의 조화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서비스의 본질 및 조직방식, 급여수준 및

* 國光大 社會福祉學科 助教授

1) I. Gough,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Macmillan, London, 1979, p. 64

수단과 소유 등 국명이라고 알고 있는 책임없는 짜깁기 대법이 있다.

Shalev는 단편적으로 발표된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계급갈등 파라다임 *class conflict paradigm*을 종합하여 사회구조(계급의 크기와 수)→노동자계급의 동원화(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힘)→국가권력의 계급적 균형(국가의 좌파정당에 대한 통제)→복지국가의 정책(시간, 성장, 재분배)에 이르는 일련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첫번째 변수인 사회구조는 선행변수인 전자본주의사회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노동자계급의 동원화는 계급 이해을로기의 해기모니에 영향을 주어 복지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동원화와 국가권력의 계급적 균형이 복지국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구조의 제약을 받게 되며, 복지국가정책과 국가권력의 계급적 균형은 노동자계급의 동원화에 확률 *feedback* 될 수 있다.²⁾

Shalev의 모델이 Gough의 모델보다 다소 정교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물자는 계급갈등이 사회복지의 득립변수라는 데 있다. 쉽게 말해서 현대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계급갈등의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의 음모이론 *conspiracy theory*에 의하면 복지(구체제도)는 시민의 무질서를 해소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 또는 통제책으로 간주된다. 이 이론은 Piven와 Cloward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³⁾ 이들은 미국의 구체제도가 ① 흑인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② 도시 내부의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며, ③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결과인 불평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음모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⁴⁾

앞에서 언급한 계급갈등이론이 갈등과 복지에 대한 실증주의적 이론이라면 음모이론은 복지와 갈등의 관계에 대한 녹적론적 이론이라는 차이가 있

2) *Ibid.*, p. 66

3) M. Shalev, "Class Conflict and the Western Welfare State," in S.E. Spiro and E. Yuchtman-Yaar (eds.),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Academic Press, N.Y., 1983, p. 29의 그림 참조.

4) F.F. Piven and R.A. Cloward, *Regulating the Poor: the Functions of Public Welfare*, Vintage, N.Y., 1971, ch. 1 참조.

5) J. Higgins, "Regulating the Poor Revisited,"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7, Part 2, 1978, pp. 190~191

인 위치에 있나는 시선을 정책이 뛰어난 점에서 보아야 한다.

복지국가의 정당성 위기론 *legitimation crisis theory*에서도 갈등과 복지의 관계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O'Conner, Wolfe, Habermas, Offe 등에 의해 발전된 이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복지국가라는 체제를 통해 자본축적 *accumulation*과 정당성 *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기능이고, 후자는 잔인한 자본주의의 죄악의 효과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복지적 기능이다.⁶⁾ 복지는 위험계급 *dangerous class*에 대한 통치책이며,⁷⁾ 국가의 정당성 재고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종의 위기관리제도인 복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존립요건인 자본축적과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곧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뜻한다.

자본축적과 정당성은 각각 자유주의 *liberalism*와 민주주의 *democracy*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지되나 이 두 이념간에는 궁극적인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복지국가는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의해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을 기하지만 이 자본주의는 전체를 강조하는 균주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에 덜 렘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의 근본적 원인은 계급갈등에 있다.⁸⁾ 계급갈등은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 오게 되므로 복지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따라서 재정위기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정당성 위기론은 복지의 갈등의 관계에 초점을 둔 음모이론보다 진실보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이 이론도 갈등과 복지의 관계를

6) J. O'Conner,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St. Martin's Press, N.Y., 1973, p. 7

7) Pemberton은 복지가 위험계급에 대한 통치책이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실업자뿐만 아니라 노령자, 장애자, 과부, 상이용사 등도 주요한 복지 대상인데 이들이 과연 위험한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A. Pemberton, "Marxism and Social Policy: a Critique of the 'Contradictions of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2, Part 3, 1983, p. 297

8) V. George and P. Wilding, *The Impact of Social Policy*, RKP, London, 1984, p. 238

“1970년대 미국 사회학자들이 제기한 이론이었던 사회양심이론 *social conscience theory*⁹⁾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체로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관점에서 복지란 무언가 사회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의 표출로 이해되어 왔으며,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계몽주의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목시적으로 가정하여 웃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선과 이타주의로 부터 복지의 원천을 찾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주의적 이론에 의하면 인도주의보다는 위장적이고, 음모적이며,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등기와 이익에 의해 복지가 출현하였고 발전될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이론들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바, 비록 목적론적이라는 점에서 논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¹⁰⁾ 극히 제한된 경험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증상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시각의 폭을 확대하고 자본주의와 사회복지간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순수 이론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1984년 여름 서울의 한 판자촌인 목동에서 발생한 일련의 영세민 집단행동은 갈등주의적 사회복지이론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 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소위 “목동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영세민의 집단행동이 복지와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영세민이 독립된 계급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급갈등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빈곤층이라는 하나의 집단과 정부간의 이익대립이었다는 점에서 갈등현상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굳이 한정시킨다면 집단갈등과 복지간의 관계를 목동사건이 보여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목동사건이 앞의 이론중 음모이론이나 정당성위기론과 같이 갈등흡수 또는 갈등통제의 동기로서 복지가 출현했다는 목적론을 검증하는 사례

9) J. Baker, "Social Conscience and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8, Part 2, 1979, pp. 177~206

10) Higgins, *op. cit.*, p. 191

본인에게 밀정이 빙곤증 환인에게 아파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다. 흐느느 운역부 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빙곤증과 정부간의 집단갈등의 정도에 따라 빙곤증의 복지적 이익이 확대된 사실을 목동사건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II. 木洞事件의勃發과展開¹¹⁾

목동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최초로 표면화된 것은 1984년 8월 27일 일대 주민 2천여명이 공항로 및 안양천변에서 “선대책 후철거”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이다. 그 전에 서울시는 목동, 신정동 일대에 신시가지 140만평을 조성하고 土地共營開發방식을 도입하여 10~15평형 시민아파트 장기임대분양 계획이 포함된 야심만만한 도시재개발사업을 발표한 바 있었다(4월 12일). 그러나 불과 한달 후 소규모 아파트는 배제한 채 20평 이상만 짓겠다는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지역 철거민촌에 살던 도시빈곤층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후 ‘동아일보’ 8월 8일자에 서울시의 장사속 아파트 건설계획이 기사화(평당 7~14만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비 34만원에 낙찰하고 분양가는 평당 105~134만원으로 하여 순익 1조원의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기사)되자 8월 15일 주민들은 “철거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였고 드러어는 앞서 언급한 소위 “양화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9월 21일 열보현 시장은 가옥주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에는 黃入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집단화하기 위해 10월 21일에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새로이 세입자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다. 11월 14일에는 세입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11월 15일에는 강서구청에서 주민과 직원들간의 충돌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주민 1백여명이 경인교속도로 상에서 시위를 시도해 도로가 4번 차단되기도 하였다.

11) 木洞事件의 구체적 내용은 당시의 일간신문기사, 서울시의 목동개발 자료, 주민의 요구가 담긴 유인물, 재야단체의 보고서 및 이동원의 소설 「목동아줌마」(東光出版社, 1985)를 참조하였다.

이를 신고 당시 경찰에게 서찰시정 고지문을 보니 이때 경찰이 시찰시정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하였다. 2월 17일에는 현장공사 중지를 시도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전설사무소 일부를 파괴하였다. 이후 시위는 더욱 확대되어 3월 11일에는 천경들과 천년 투석전을 벌였고, 다음날은 출근포기와 더불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3월 16일에는 TV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고 KBS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3월 14~18일간 신민당사에서 농성하였다. 3월 19일에는 강서구 부구청장 연금사태가 발생하여 주민 7명이 구속되었으며, 3월 20일에는 서울대생들이 시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3월 21일 경찰에 의해 다수의 가옥주가 연행되었고 이중 4명은 구속, 13명은 축출, 1명은 훈방되었으며 이후의 극한적인 시위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III. 木洞事件의 性格

1. 地域住民의 性格

강서구 북동은 경인고속도로 남쪽 안양천변의 저지대로서, 주민들에 의해 “안양천변 뚝방동네”라고 불리는 판자촌이 문제의 지역이다. 이곳은 1964년 10월 불량주택 철거계획에 의해 당시의 서울시 판자촌이었던 충인동, 대방동, 여의도 비행장 부근, 아현동, 후암동, 이촌동, 해방촌 등지에서 이주한 都市貧困層에 의해 집단거주지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쓰레기차에 실려와 버려지다시피 해서 8평씩의 땅을 분양받았다고 한다. 처음 판자촌 형성 당시의 이들의 비참한 기억은 북동사건의 저변에 깔린 심리적 원인(恨)이 되었다.¹²⁾

사건 당시 가옥주 2천 5백여 가구, 세입자 5천 2백여 가구 약 3만 2천명이 거주하였다. 가장이나 그 처 또는 자녀를 대부분은 노동, 행상, 공원 등 도시하류층의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都市非公式部門”¹³⁾

12) 이동철의 소설 「뚝동아줌마」는 주로 이들의 “恨”에 초점을 두고 있다.

13) 尹辰佑, “도시비공식부문”, 李大根·鄭基喨編, 「韓國資本主義論」, 2권, 1984, pp. 251~287

의 전형적인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2. 要求의 集團的 表出

이들의 요구가 무리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이들의 요구가 집단행동을 통해 표출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關係要路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지 관련책임 공무원과의 면담을 추진한다든지와 같은 평화적·타협적 요구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모두 좌절되자 결국은 집단행동을 불사하였다.

3. 輿論의 批判的 姿勢

이전의 다른 빈곤층 집단행동과 달리 목동사건은 배스컴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러나 TV나 신문 등 배스컴은 이 사건에 대해 결코 친대하지 않았으며 거의 비난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였다. 즉 이들의 요구를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이며 무리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화는 이들의 집단행동을 더욱 차단하였다.

4. 外部集團의 同調

이들 지역주민은 사건발생 초기에 종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종교단체는 이들의 입장을 적극 응호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 사회선교협의회, 명동천주교회, YWCA 등 종교단체에서는 유인물을 만들어 사건의 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의 입장을 비난하였으며 공청회나 연극을 열어 이들의 요구를 적극 대변하였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과 같은 운동권단체에서도 유인물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응호하였으며, 굽기야는 대학생들의 시위현장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고 서울대생 일부는 직접 시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 후 在野 운동권단체에서는 목동사건을 도시 빈민의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부각시키고 반정부활동의 주요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IV. 驅逐의 破局

목동사건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을 갈등기간, 갈등당사자, 갈등의 강도, 갈등지역, 요구자 및 당국의 태도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갈등기간은 1984년 8월에서 해를 넘겨 1985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지속되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일시적 집단행동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갈등의 당사자는 철거대상인 도시빈곤층과 정부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양천변 저지대 지역주민과 강서구청 및 서울시였다.

갈등의 강도는 온전과 파괴가 혼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진정서, 시위, 농성, 건물파괴, 투석전 등 다양하였다.

갈등지역은 처음에는 거주지역에 국한되다가 점차 구청, 시청, 방송국, 신민당사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요구자 즉 지역주민의 태도는 수번에 걸친 철거(도시재개발로 인한)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난한 생활로 소외의식이 팽배해 있었으며, 서울시가 폭리를 남기며 지역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신문기사에 결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집단행동 이후에는 경찰의 다소 과도한 진압에 더욱 격분하였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거의 일방적으로 당국에 의해 무산되고 여론에 의해 무리한 것이라고 비난받게 되자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

반면에 당국은 철거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자세를 취했으며 처음에는 주민의 요구를 거의 무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가 집단행동이 야기되자 조금씩 들어주는 듯한 대안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갈등을 확대시켰다.

이상과 같은 목동사건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불리적인 도시재개발정책 그 자체, ② 주민의 소외의식과 피해의식, ③ 다소 과도한 경찰 진압, ④ 당국의 적극적 관심결여, ⑤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책의 수립, ⑥ 주민의 내분 즉,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불화, ⑦ 메스컴의 비난 보도가 그것이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목동사건은 여러 요인에 의해 점차 격화되어 갔다. 주민들은 이성적인 요구를 감정적인 차원에서 표출해 버렸고, 당국은 대화와 타협의 평화적 방법보다는 물리적 억압에 주로 의존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잘등 양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요구가 점차 커졌고 동시에 당국의 대책도 양보적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요구와 대책의 에스컬레이트현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984년 4월 17일 처음 목동지역 가옥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을 때 허가주택 철거민에 대해서만 목동지구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때 주민들은 막연히 불안을 느끼면서 “선대책 후철거”를 원칙적으로만 요구하였으며,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시의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동년 8월 26일(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후) 당국은 가옥주에 대해 허가주택은 감정가로 보상하고 무허가 주택은 1채당 이주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다소 후퇴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요구와 대책의 에스컬레이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철거에 따른 적정보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허가·무허가 주택을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할 것, 짓가 보상할 것, 값싼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무허가 주택을 허가화 하며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동년 9월 21일(양화교사건 이후)에는 당국은 더욱 후퇴하여 무허가주택도 감정가로 보상한다고 하였으며 보상가는 평당 23~25만원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양화교사건으로 보상금이 약 100만원정도 증가하였고 아파트 입주권프리미엄이 1,000만원에 달했으나, 대체로 가옥당 면적이 5~8평에 불과하여 보상금이 150~200만원에 불과하고 프리미엄은 시의 보상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다 합한다고 하여도 1,200만원정도이나 이중 전세금(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하면 1,0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서울시내에서 집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하여 반대하였다.

김네마을 세트아이니 성숙시행 구역 및 것들 보다아기에 이드렸나.

그리하여 1985년 3월 18일(세입자들의 서울시청 앞 농성 후) 세입자 대책이 발표되었다. 즉 다음과 같은 4안 중 택1하라는 것이었다. 제 1안 :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정상가구에 한해 가구당 20평형 아파트 방 1개. 제 2안 : 정상가구에 한해 30만원, 이주 보조금 지급, 가족 1인당 5만원 추가지급, 상한선 50만원, 듀신가구는 20만원. 제 3안 : 지방 이주 희망자에게는 진출보증금 70만원, 정착지원금 60만원 지급, 생업자금 200만원 응자. 제 4안 : 서울·경기지역에 행정지원으로 집단이주. 제 1안을 선택한 경우 입주권을 프리미엄 200만원에 전매후 대부분 이주했으며, 제 2안은 영세민 구호대책에 불과하다하여 외면하였고, 제 3안은 80여 가구가 선택했으며, 제 4안은 선택하지 않도록 당국이 유도했다고 한다.

한편, 이 시기에 가옥주들은 현 위치의 아파트에 무상 입주하거나 1,500 ~ 2,000만원 정도의 신가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당국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의한 체지가 강화되고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하나 둘씩 쇄녕한 채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V. 木洞事件의 示唆點

50여 차례의 집단시위, 78차례의 당국과의 집단대화, 일부 구속자, 을씨년스럽게 철거된 주택 등을 남기고 복동사건은 진정되었다. 아파트 무상인주나 현신가 보상을 주장한 가옥주들의 요구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라는 세입자들의 요구는 다소 무리한 것이 사실이었다. 일부 단신 貢入者들은 전세금(가옥주로부터 받음)과 함께 2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였다.

그러나 가옥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시한 서울시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소위 복부인들로부터 나오는 돈이지 법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당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여 더욱 의혹을 짙게 만들었다.

목동 철거대상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사회복지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그동안 갈등주의적 사회복지이론이 우리나라에도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데에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소수 직업 엘리트 또는 관변엘리트에 의해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주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온 것도 사실이다. 목동사건에 여하한 가치판단이나 관점 적용을 배제하고 사실만 놓고 평가한다면, 사회갈등(집단행동)은 분명히 복지(주민의 요구판결)를 증대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주민들의 도덕적으로 무너한 요구가 표출되었고 당국이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 노정되었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갈등이론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이론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개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끊임없이 갈등을 제기해야만 소외된 자기의 뜻이 커진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안정과 균형을 위해 이러한 갈등을 체제내로 적극 수렴(소위 갈등의 제도화)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적·신갈등주의적 관점이다. 필자는 신갈등주의적 입장에서 사회갈등의 요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목동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경청을 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설득력있는 대책을 합리적으로 강구했기를 때 늦었지만 기대하였다.

목동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지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이것이 전례가 되어 또다른 집단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1985년 5월에 가락·오금등 지역주민들도 집단행동을 벌인 바 있다. 이 지역 세입자들은 복동지역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이 사건은 잘못된 복지는 오히려 역으로 집단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都市再開發事業은 地域福祉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된다면, 社會統合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복지가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목동사건은 던져주었다는 것이다.